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2. 7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)
- 발의일자: 2025. 1. 23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. 23.(목)
- 상정 및 의결: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2. 7.)

2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(안 제4조제2항)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제한 한도 삭제(안 제4조제5항)
-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5조제1항)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 포함(안 제7조제2항제5호)
-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(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)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5조 및 제16조
 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의안번호 제2023-793호, 2023. 10. 23.)
 -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1366(2024. 4. 4)호 및 市 예산담당관-4251(2024. 4. 4)호
관련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협조 요청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입법예고(2024. 12. 2.~12. 23.) 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협조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4조제2항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규모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적립기준을 완화하였고,
 - 안 제4조제5항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사용가능 제한 비율을 삭제하였으며.
 - 안 제5조제1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하였음.
 - 안 제7조제2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였으며,
 -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자료에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을 포함하고, 연도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

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 안 제4조제5항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제한 한도 삭제에 대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

- 안 제4조제5항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제한 한도 삭제에 대하여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재정운용을 당부함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